

식품의 특별소비세, 관세제도 개선 건의

한국식품공업협회는 식품중 다류, 청량음료, 설탕 등에 제조원가의 10~15%씩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의 폐지 또는 단계적 세율인하를, 식품원재료의 높은 관세율과 가공식품의 낮은 관세율을 누진관세제도로 개선하는 등 식품산업의 경쟁력제고 및 발전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에 그 내용을 건의하였다.

특별소비세는 법 제1조제1항에 의해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희음식행위에 대하여 과세함.

Ⅰ. 식·음료품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폐지 건의

1. 현 황

종 별	품 목	세율(%)	비 고
제 2 종	커피와코코아	15	※ 과세물품의 세율 :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100분의 10
제 3 종	청량음료	10	
	기호음료	10	
	자양강장품	10	
	사탕	10	

가. 입법취지

- 사치성 물품의 소비억제와 유희행위 억제
- 稅收增大와 자원절약
- 조세부담의 역진성 보완 및 공정성 확보

나. 과세표준

- 국내가공품 : 반출가격=제조원가+일반관리비+판매비용+이윤
- 수입식품 : 수입신고가격(CIF)+관세

다. 식·음료품 과세대상 및 세율

라. 연도별 특별소비세 부과현황

-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 '93년 이전까지 내국세중 특별소비세의 구성비는 연평균 10%정도였으나 '94년이후에는 6.3%로 급속히 하락하였음. 이는 휘

- 발유, 경유가 '94. 1. 1 출고분부터 교통세(약 1조2천억원)로 전환되었기 때문임.
- 한편 '97년 내국세에서 음·식료품의 특별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0.4%에 불과함.

(단위 : 억원, %)

구 분	'93		'94		'95		'96		'97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내국세	341,746	100	384,490	100	443,820	100	492,023	100	521,531	100
특소세	36,069	10.5	24,256	6.3	26,171	5.9	31,193	6.3	31,145	6.0
식·음료	1,672	0.5	2,004	0.5	1,970	0.4	1,976	0.4	2,144	0.4

※ 자료 :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국세청

○ 특소세중 식·음료품의 비중

- 특별소비세중 식·음료품의 구성비는 연평균 6.6%정도이나 '94년의 경우 식·음료품의 특별소비세 구성비가 8.2%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휘발유, 경유가 교통세로 전환됨에 따라 특별소비세액이 28.2% 감소하였

기 때문임.

- 그러나 '97년 식·음료품들의 특별소비세 비중은 청량음료가 2.3%정도이며, 특히 코코아, 기호음료 등은 0.2~0.4%정도로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단위 : 억원, %)

구 분	'93		'94		'95		'96		'97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특별소비세	36,069	100	24,256	100	26,171	100	31,193	100	31,145	100
식·음료계	1,672	4.6	2,004	8.2	1,970	7.5	1,976	6.3	2,144	6.9
제2종										
- 커피	381	1.1	463	1.9	450	1.7	430	1.4	520	1.7
- 코코아	56	0.2	57	0.2	58	0.2	80	0.3	62	0.2
제3종										
- 사탕	301	0.8	330	1.4	363	1.4	373	1.2	402	1.3
- 청량음료	484	1.3	609	2.5	638	2.4	721	2.3	736	2.4
- 기호음료	188	0.5	246	1.0	132	0.5	101	0.3	128	0.4
- 자양강장품	255	0.7	293	1.2	329	1.3	272	0.9	296	0.9
기 타 계	34,397	95.4	22,252	91.7	24,201	92.5	29,217	93.7	29,001	93.1

※ 자료 :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국세청

2. 문 제 점

가. 입법취지에 상충

○ 식·음료품을 사치성물품으로 볼 수 없음.

- 국민생활수준(1인당 GNP 1만\$) 향상으로 커피, 코코아, 청량음료, 기호음료, 사탕(설탕)은 이미 대중소비식품화 되었음.
- 특히 커피는 가장 대중소비식품이고, 코코

아, 청량음료, 기호음료 등은 소비계층이 유·청소년임을 감안할 때 현행 특별소비세 법은 서민계층에 대한 조세주권이 훼손되고, 고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모순된 조세제도임.

나. 과세표준의 상이

- WTO체제하의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있어 국내가공식품과 수입식품과의 과세표준의 차이는 국내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즉, 국내가공식품의 과세표준은 제조장 반출가격(제조원가+판매비용+일반관리비+이윤)인 반면 수입식품은 보세구역 반출가격(수입신고가격(CIF)+관세)으로서 수입판매자의 판매비용·일반관리비·이윤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과세표준비교(냉동건조커피 200g기준)

(단위 : 원/Kg)

구 분	국내제품	수입제품	차 이
과세 표준	18,200	15,260	
특별소비세	3,549	2,976	573

- 따라서 수입식품의 경우 이와같은 세금차액을 광고, 판촉비로 사용하거나 또는 세금차액만큼 가격을 인하하여 국내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다. 세법운영상 불합리

- 새로운 사치성 물품의 수용부족
 - 국내외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기술개발 및 첨단산업의 발달에 따른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사치성 제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서민소비식품인 식·음료품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여 안정적인 稅源만 확보하려는 것은 아직

도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를 보완하는 기능 상실
 - 1977년 부가가치세의 도입에 따라 과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를 도입하였으나 식·음료품의 경우 이미 서민소비식품화 되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보완기능 상실
- 원료성물품에 특별소비세부과
 -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식·음료품중 코코아, 사탕은 전체물량의 60%이상이 완제품보다는 원료로 사용되고 있음.
 - 따라서 이를 원료로 사용한 국내가공식품은 동종·동일제품의 수입식품보다 원가부담이 커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임.
- 식·음료품간 차등세율 적용
 - 커피 및 코코아 : 15%
 - 청량음료, 기호음료 등 : 10%

3. 개선방안

식·음료품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그 타당성을 완전히 결여하고 있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그러나 정부의 예산과 稅收確保를 고려하여 일시적인 비과세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예시제의 방안도 필요함.

<제1안> : 식·음료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전면 제외

- 사유
 - 국민소득수준(1인당 GNP 1만\$) 향상에 따라 과세대상 식·음료품은 이미 서민다

소비식품화 되었음.

- 식품산업의 세계화, 개방화에 따른 국내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稅收의 감소 측면보다는 소득분배 및 소비자물가 안정측면의 기대효과가 훨씬 더 큼
- 즉, 국내식품산업 및 관련산업인 농·수·축산업 등의 발전에 따라 장기적으로 稅收증대
- 이미 선진국에서는 식·음료품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음.

<제2안> : 단계적인 세율인하 예시제

- 정부의 예산과 稅收確保 등을 고려하여 식·음료품에 대한 일시적인 비과세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 국내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特別消費稅率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예시제의 시행이 필요함.

종별	품 목	'99현행세율 (%)	2000	2001
제2종	커피와 코코아	15	5	0
제3종	청량음료	10	5	0
	기호음료	10	5	0
	사 탕	10	5	0
	자양강장품	10	5	0

II. 식품관련 기본관세율체계 조정 건의

1. 배 경

- IMF체제하의 식품업계는 수출 및 내수의 극심한 부진과 재고 누적으로 매출신장이 크게 둔화되고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음. 이는 대부분의 원료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원료관

세율이 이를 원료로 사용한 완제품의 관세율보다 높아 국제경쟁력이 열악하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식품업계는 경영 각 부분에 걸쳐 비용경감과 구조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를 위한 관세정책의 뒷받침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
- 경제개방의 가속화와 제도운용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WTO체제하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유일한 정책수단은 현행 역차등관세율체계를 누진관세율체계(원료 輕課, 중간원료·완제품 重課)로 전환하는 관세정책이라 할 수 있음.
 - ※ 역차등관세율구조 : 원료의 관세율이 이를 사용한 중간원료 및 완제품의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 구조
 - ※ 누진(차등)관세율구조 : 원료, 중간원료, 완제품간의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관세율 구조
-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선진국들도 누진관세율체계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산업의 중요도에 따라 심한 누진관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2. 문제점

가. 역차등관세율구조

- 현행 식품관련 기본관세율체계는 원료의 관세율이 이를 원료로 사용한 완제품의 관세율보다 높은 역차등관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업의 채산성 및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음.
 - 유제품, 견과류 등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경우 국내 농·축산업보호를 위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이를 사용한 완제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8%의 관세율을 적용

원 료	원 제 품		
	기본관세율(%)	기본관세율(%)	
유장·유장분말	20	아이스크림	8
유채유	30	마아가린	8
해바라기씨유	25	마요네즈	8
카제인	20	커피크리머	8
토마토피레	50	토마토소스	8

나. 가공식품 관세율의 국제비교

- 역차등관세를 나타내고 있는 품목들 가운데 비스킷, 아이스크림, 캔디류, 초콜릿의 관세율은 일본, 중국, EU 등 주요 경쟁국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비 스 켓 : 한국 8%, 일본 24%, 중국 25%, EU 13%+EA
 - 아이스크림 : 한국 8%, 일본 28%, 중국 45%, EU 12%+Ecu28.0/100kg
 - 캔 디 류 : 한국 8%, 일본 35%, 중국 15%, EU 13%+EA
 - 초 콜 릿 : 한국 8%, 일본 28%, 중국 12%, EU 12%+EA
- 이와 같이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있는 주요 경쟁국들의 과자류 관련 관세율 수준도 자

국내 산업보호를 위하여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3. 건 의

- 관세정책의 산업보호기능 강화
 - 농업생산기반이 취약하여 원료농산물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식품산업은 원료나 가공도가 낮은 원자재에 대하여 완제품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함.
- 세부품목별 건의내용
 - 식품관련 기본관세율 조정은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누진관세율체계 유지가 가장 바람직함.
 - 이에 따라 본회에서는 식품원료중 국내생산이 없거나 국내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료농산물 17개 품목에 대하여는 관세율을 인하하고, 역차등관세율을 나타내고 있는 동시에 G-7, OECD국가보다도 관세율수준이 낮은 완제품 21개품목에 대하여는 관세율을 인상해 줄 것을 건의함.